

『초광역 외 유입인력 장려금 지원』 참여 근로자 모집 공고

고용노동부와 대구광역시·경상북도는 대구·경북 미래모빌리티산업의 우수 인력 유입 및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「초광역 외 유입인력 장려금 지원 사업」을 추진하오니, 관심 있는 근로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년 9월 10일
경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장

1 사업목적

- ☐ 경북지역 미래모빌리티 관련 기업에 취업한 타 시·도 전문 인력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, 우수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함

2 모집개요

- ☐ 사업명 : 초광역 외 유입인력 장려금 지원사업
- ☐ 지원규모 : 품질/생산관리, 기술·연구직종 신규채용근로자 최대 20명
(단순노무/현장/일반행정 제외)
- ☐ 지원개요

지원 프로그램	지원 대상	지원 내용
초광역 외 유입인력 장려금	- 경북소재 모빌리티 관련 기업 신규 채용 근로자 - '26.01.01. 이후, 타 시·도(대구 제외) → 경북도 내 기업으로 취업한 신규 채용 근로자 - 품질/생산관리, 기술·연구 직종 - '26.05.22 이후 입사자	- 타 지역 우수 인재의 경북 지역 내 안정 적인 정착을 위한 근로자 장려금 지원 - 인당 최대 1,200만원 지원(매월 400만원 X 최대 3개월)

3

상세 지원 내용

□ 지원대상

- 거 주 지 : 대구/경북을 제외한 타 시·도에서 경상북도로 취업한 신규 근로자
- 취 업 처 : 경북 소재 모빌리티 및 전·후방 기업
- 직 종 : 품질/생산관리, 기술/연구 직종(단순노무/현장/일반행정 제외)
- 입사시기 : 2026년 5월 22일 이후에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
- 전입시기 :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전입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
- 우선지원 : 대경이음 상생R&D 지원기업 근로자

□ 지원내용

- 지원금액 : 근로자 1명당 최대 1,200만원 이내
- 지급방식 : 월400만원씩 3개월간 분할하여 근로자 계좌로 직접 입금
- 지급기간 : 최대 3개월(26년 12월말 이전,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)

4

신청방법

□ 신청기간 : 2026.09.10 ~ 모집 완료시 마감

*조기 신청자 우선 선발로 예산 소진시 사전 마감 될 수 있음

□ 신청방법 및 문의처

○ 「경상북도 일자리포털」 홈페이지(www.jobgb.co.kr)에서 사업공고 확인 → 온라인 사업신청 및 증빙서류 업로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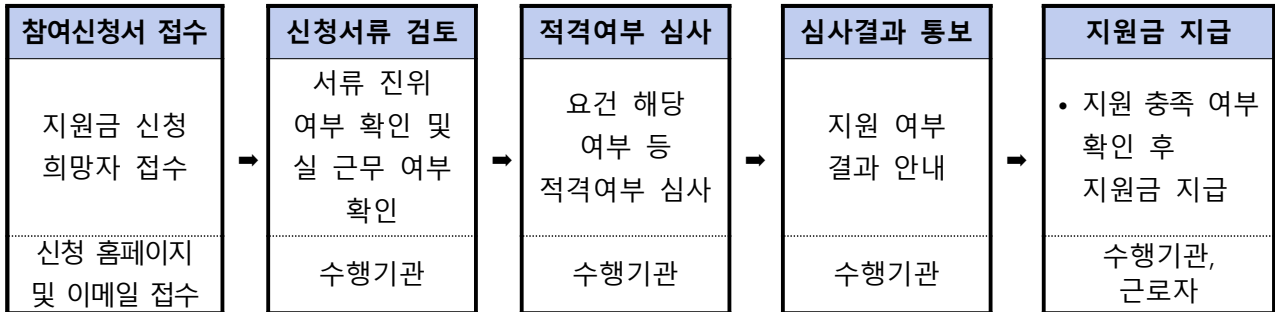
• 경북테크노파크 미래차부품진흥실

- 이준승 책임연구원 053-850-7701, 최수정 연구원 053-850-7706

5

지원절차

□ 참여 신청 및 지원 절차



* 상기 일정 및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○ (참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) 참여 희망자는 ‘신청서 및 증빙서류’를 작성하여 신청

○ (참여 신청서류 검토 및 심사)

- 요건 검토 및 중복지원 조회 등 지원 적격 여부 검토
- 신청자 중 지원요건에 부합한 인원을 대상으로 적격여부 심사 진행
- 예산 소진에 따라 마감 및 재공고 진행

○ (지원 가능여부 안내) 선정 위원회 심사 후, 지원가능 여부 결과 안내 예정

6

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	비고
필수	- 근로자 참여 신청서 1부	
	-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	
	- 주민등록표 등·초본 각 1부(신청일 기준, 주소이전 이력 기재)	
	- 참여자 통장 사본 1부	
	- 신청인 4대 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각 1부(전체 이력 인쇄)	
	- 재직증명서 각 1부	직종 확인 가능
	- 취업 기업 사업자등록증 1부	요청 시

□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(평가결과는 신청기업 및 근로자에게 개별통보)
- 중도퇴사 또는 근속기준 미충족 시 해당 기간의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음
- 신청서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접수하며,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하면 결격 처리 될 수 있음

※ 지원제외 대상 (접수마감일 기준)

- 제출 서류가 허위 이거나 타 기관·타 지원 사업에서 동일한 채용에 대한 유사한 고용장려금을 중복하여 지원
- 해당 기업의 사업주와 직계 존·비속, 배우자, 형제·자매 관계에 있는 자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- 해당 사업 신청 전 이미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
- 동일 법인 또는 동일 사업주 하에서 퇴직 후 1년 이내에 재입사(재고용)한 근로자
-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또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자
-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